

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6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가.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향상을 위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
- 나. 최근 환경부 제정 표준 수도급수조례 안을 채택 · 반영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·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수도요금을 정산하는 내용을 규정함(안 제24조제2항)
- 나. 도시계획사업 내 요금정산 및 폐전 신청 규정 신설(안 제24조제3항)
- 다. 사용자등의 신청이나 동의 시 전자문서를 통하여도 납부 고지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(안 제36조제1항)
- 라.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한도 축소 내용을 규정함 (안 제44조제1항)
  - 100만원에서 → 50만원으로 축소

## □ 참고자료

- 가.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1부.

##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·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매 또는 공매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1항 단서 중 “다만,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”를 “다만,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44조제1항제3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시, 군·구 소속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 받는 수도사용자 등은 종전대로 고지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 (권리의무의 승계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 다만, 체납요금은 승계하지 아니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	<p>제24조 (권리의무의 승계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·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. 다만, 경매 또는 공매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③ 도시계획사업으로 기존 수도사용자가 이주 할 경우에는 수도사용자 등 또는 사업시행자는 수도요금의 정산 및 폐전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
<p>제36조 (납부고지)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. 다만,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6조 (납부고지) ① ----- ----- 다만,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 할 수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4조(포상금 지급) ① (생략)</p> <p>1. · 2. (생략)</p> <p>3. 포상금은 지급시기에 따라 개인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4조(포상금 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 이 경우 시, 군·구 소속 공무원의 누수신고 포상금은 개인당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

관계법령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사항 없음”